

II.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포함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 문서

1. 인증의 승인

1.1 제품인증 대상의뢰자, 대상품목, 인증분야 및 인증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1.1.1 의뢰자

의뢰자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서 해당제품의 인증범위의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뢰자로 한다.

1.1.2 대상품목, 인증분야 및 인증범위

1) 대상품목은 공산품, 전기용품, 식품, 농수산물,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화장품으로 한다.

2) S마크는 품질, 살균, 항균, 탈취, 저독성, 생분해성, 비자극, 품질안정, 구조안전 등 제품의 기능으로 COSMOS 마크는 COSMOS ORGANIC (또는, 유기농), COSMOS NATURAL (또는, 천연)으로 구분하여 인증분야를 설정하고 인증분야를 각각의 마크 명칭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된 항목을 인증범위로 한다.

1.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가 인증시스템 형식별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신청자의 수행능력을 심사 한다.

1.2.1 S마크 인증시스템 형식 Type 1b의 경우,

제품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1.2.2 S마크, V체크마크 인증시스템 형식 스킴 유형 2, 3, 5의 경우, 해당 공장심사기준 중 소비자 보호체계가 10점 이상이고 총점이 70점/100점 이상이며 제품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1.2.3 COSMOS 마크 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해당시)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2. 인증의 유지

2.1 제품인증을 받아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의뢰자는 제품인증 업무 약정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종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인증 당시 요건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후관리 시에 적발되면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인증취소, 표시정지, 판매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2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증시스템 형식3, 형식5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형식1b의 경우 연장할 수 없다.

2.3 의뢰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1회/년 이상 (Type 5에 한함), 인증기준에 따라 1회/년 이상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하고 평가준비 및 평가절차서(KTR-QP-11)의 7.4.3 항에 따라 제품인증 신청 시의 제품심사의 일부를 공인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시스템 1b일 경우 제외한다.

2.4 상기조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은 제품,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과 계절상품 및 일시 생산중단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자와 협의하여 제품심사주기를 조정하고 약정서에 명기한다.

2.5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분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공장 또는 타기관의 시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생산공장의 시험설비란 설비의 상태가 양호하고 교정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설비를 말하며 위탁계약 절차서(KTR-QP-08) 및 현장시험 절차서(KTR-QP-09)에 따른다.

2.6 제품심사 시 채취시료를 연구원에 운송해야 되는 경우 소요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공장의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현지 공장 확인검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면 출장비(교통비, 숙박비)는 인증업체에서 부담한다.

3. 인증의 변경 또는 확대

3.1 인증의 변경

3.1.1 지위승계

1) 제품인증에 관련하여 생산하는 공장, 설비, 사람 등의 물리적인 사물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전부 즉 법적,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승계되어 승계전의 모든 책임까지도 승계가 되는 경영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의뢰자의 의무 중에 약정요구사항을 유지·관리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건물, 설비, 인력 등 생산시스템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제품인증을 받은 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경우
- ② 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 ③ 법인의 합병에 따라 존속하는 법

3.1.2 신고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자의 공문으로 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원본
- 2)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양도 양수의 경우)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받은 경우)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 (합병의 경우)
- 5) 그 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1.3 서류검토

- 1) 인증책임자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확인하게 한다.
- 2) 의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증책임자와 품질책임자는 가능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요서류는 공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3) 인증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 4)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출장 심사를 하며, 그 결과 인증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위승계를 보류한다.

3.2 인증서 재교부

3.2.1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제품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와 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약정 및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 3) 의뢰자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 4)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 등 인증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

3.2.2 상기조항 중 2호 및 3호의 사유로 재 약정 및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1인이 실시하며, 이 때 심사수수료는 면제한다.

3.3 소재지 이전

3.3.1 의미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의뢰자가 공장확장 등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인증기관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3.3.2 제출서류

공문서 형식을 취하여 소재지의 변경내용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어 기재하고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인증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3) 변동내역 신고서 (지위승계와 동일)
- 4) 제품표시 인증서 원본

3.3.3 서류검토 및 인증서 재교부

- 1) 인증책임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전된 장소에서 인증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장심사를 1인이 실시하며, 이 때 심사수수료는 면제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한다.
- 2)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장심사기준 등에 미달되어 인증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토록 조치한다.

3.4 인증책임자는 이미 승인한 인증범위에 대한 수정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절차가 적절한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인증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3.5 인증의 확대

인증신청 절차서(KTR-QP-10)의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다만, 평가준비 및 평가 절차서(KTR-QP-11)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공장심사는 생략한다.

4. 제품인증의 경고, 정지 및 취소

4.1 개선경고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서면으로 개선경고를 하게 된다.

- 4.1.1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 4.1.2 사후관리에 따른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4.1.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4.1.4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 4.1.5 경미한 결함이라함은 사후관리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외관, 치수 등의 검사항목이 불합격인 경우를 말한다.

4.2 표시정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표시정지를 시킨다.

- 4.2.1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4.2.2 상기 4.1항에 의한 제품인증 개선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4.2.3 인증책임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인증마크사용을 중지, 인증제품을 시장에 출하금지 및 필요시, 제품회수를 포함한 수정활동을 인증의뢰자에 요구해야 한다.

4.2.4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인증분야 시험항목 중 구조 등의 시험항목이 불합격한 경우를 말한다.

4.3 인증의 취소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인증을 받은 동일품목에서 인증기준, 종류 및 등급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의뢰자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4.3.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4.3.2 제품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 인증 받은 자가 다른 회사제품을 자체 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기준표시를 할 때 등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기준표시를 할 때 등

4.3.3 허위광고를 한 경우

4.3.4 사후관리 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4.3.5 상기 4.2항에 의한 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4.3.6 제품인증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제품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4.3.7 기타 제품인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이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준표시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사후관리 및 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

4.3.8 치명결함이라 함은 인증분야 시험항목 중 기능과 관련된 시험항목이 불합격한 경우를 말한다.

4.3.9 11.4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인증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5.1 인증기관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시스템 형식 2, 형식 3, 형식 5의 경우 마크 표시 제품을 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인증시스템 형식1b의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5.2 제품인증기관은 필요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인증표시상품에 대하여 수시로 표시사항의 허위표시, 유사표시 및 과대광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3 제품인증기관은 필요시 시중에 유통 중인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품목은 년1회 이상 품질조사(n=1)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가품, 중량물, 부품 등은 생산공장에서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3.1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

5.3.2 유사제품으로 변조가 쉬운 제품

5.3.3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

5.3.4 계절상품

5.3.5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

5.3.6 소비자의 신체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 등

5.4 사후관리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해당기업에 경고, 해당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 약정취소,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제품인증기관은 의뢰자가 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소기의 수정사항과 같이 KS Q ISO/IEC 17065 7.10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변경사항 또는 관련이 있다면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통보토록 요구하고, 의뢰자가 선언한 변경사항이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인증기관이 의뢰자에게 통보한 연후에야 선언한 변경사항에서 연유하는 인증제품을 방출할 수 있다.